

國朝文科榜目の 편찬과 18세기 ‘인물정보학’

박 현 순*

-
- | | |
|-----------------------|----------------------|
| 1. 머리말 | 4. 영조·정조대 국조문과방목 편찬의 |
| 2. 예조와 홍문관의 국조문과방목 편찬 | 특징과 ‘인물정보학’ |
| 3. 민간의 국조문과방목 편찬 | 5. 맺음말 |
-

초록: 國朝文科榜目은 조선시대 문과 급제자의 명단을 누적적으로 수록한 자료로, 현재 상당히 많은 수가 전한다. 그런데 그 내용을 비교해 보면 異本마다 명단의 수록형식이나 각 인물에 대한 정보가 각기 다른 경향이 보인다.

이 글은 국조문과방목이 왜 이렇게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가 하는 의문에서 출발하여 여러 이본들을 검토하며 그 편찬 과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영조·정조대에 국조문과방목이 새로 편찬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영조·정조대 국조문과방목 편찬의 특징과 그 학술사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국조문과방목은 조선전기부터 편찬, 유통되었다. 이때부터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필사되고 내용이 증보되면서 자연스럽게 여러 異本들이 존재하게 되었다. 국조문과방목은 특정한 한 개인의 편찬물이 아니라 여러 세대의 인물들이 수행한 공동작업의 산물이다.

그 가운데 영조·정조대에는 홍문관, 윤급, 이만운 등 편찬자들이 각자 고유한 기재 형식을 고안하고 내용을 증보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그 결과 국조문과방목은 보다 체계적이고 풍부한 인물정보를 담은 책자로 거듭났다. 이 책들은 다시 여러 사람에게 의해 필사되고 증보되었다. 현전하는 국조문과방목은 많은 경우 영조·정조대에 진행된 편찬 작업의 산물이거나 이를 계승한 증보판이다.

18세기 국조문과방목의 편찬은 무엇보다 講學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국조문과방목은 족보를 통해 급제자들의 인물 정보를 채록하는 동시에 족보 편찬을 위한 인물정보를 제공하였다. 이와 같은 작업은 官案이나 先生案, 號譜와 같은 분야별 인명록의 편찬과도 그 궤를 같이하는 것이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K부교수.

다. 이 작업은 ‘인물정보학’이라고 지칭할 수 있으며, 국조문과방목의 편찬은 그 하위 분과에 해당된다.

핵심어 : 國朝文科榜目, 國朝榜目, 榜目, 講學, 尹汲, 李萬運

1. 머리말

國朝文科榜目은 조선시대 문과 급제자의 명단을 누적적으로 수록한 자료다. 그동안 조선시대 지배층의 구성을 분석하는 기초 자료로 널리 활용되어 왔으며,¹⁾ 근래에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구축한 한국역대인물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선시대 문과급제자의 인적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²⁾

국조문과방목은 國朝榜目, 海東榜目, 登科錄, 龍門錄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는데, 현전하는 사례로 미루어 가장 널리 사용된 이름은 ‘국조방목’이다. 문과가 과거를 대표하였기 때문에 굳이 문과라는 점을 특기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던 듯하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그 성격을 분명히 하기 위해 ‘국조문과방목’으로 지칭하고자 한다.³⁾

1) 대표적인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Edward W. Wagner, 1972 “The Ladder of Success in Yi Dynasty”, *Occasional in Asian Genealogy 1*; Edward W. Wagner, 1975 “The Civil Examination Process as Social Leaven: The Case of the Northern Province in the Yi Dynasty”(에드워드 와그너 지음, 이훈상·손숙경 옮김, 2007 『조선왕조 사회의 성취와 귀속』 일조각 수록) ; 김영모, 1977 『조선지배층연구』, 일조각; 남지대, 1990 『중앙정치세력의 형성 구조』, 『조선정치사』 상, 청년사; 차장섭, 1994 『朝鮮前期 文科及第者의 成分』, 『朝鮮史研究』 3; 차장섭, 1994 『朝鮮後期 文科及第者의 成分』, 『대구사학』 47 ; 차장섭, 1997 『조선후기 별열연구』, 일조각; 원창애, 1997 『朝鮮時代 文科及第者 研究』,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창현, 1999 『조선초기 문과급제자연구』, 일조각.

2)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

3) 국조문과방목은 ‘종합방목’, 시험별로 작성된 방목은 ‘단과방목’으로 일컫기도 한다(송준호, 1970 『李朝生員進士試의 연구』, 대한민국국회도서관, 34면). 사료 상에서는 국조문과방목

방목으로 지칭되는 자료는 여러 종류가 있다. 국가에서 과거를 시행하면서 작성한 행정문서로서의 榜目文書나 榜目成冊도 있고, 동방 합격자들이 기념물로 편찬한 同年錄으로서의 文武科榜目이나 司馬榜目도 있다.⁴⁾ 이상의 방목은 시험별로 작성되며, 수록된 합격자 개인의 정보는 합격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이와 달리 국조문과방목은 급제자들을 누적적으로 기록한 자료로 급제 후의 官歷이나 특이한 행적, 諡號 등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에 걸친 정보를 수록하였다. 따라서 국조문과방목은 급제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물지의 성격도 지닌다.

국조문과방목은 현전하는 종류가 상당히 많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한국고전종합목록에서 표제를 기준으로 검색해 보면 『국조방목』 29종, 『국조문과방목』 5종, 『登科錄』 3종, 『海東龍榜』 1종, 『龍門錄』 1종 등이 확인된다.⁵⁾ 물론 서명이 다른 경우도 있고, 목록에서 누락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제 현존하는 책자는 이보다 훨씬 더 많다.

단일기관으로 가장 많은 책을 보유한 기관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다. 여기에는 도서번호를 기준으로 할 때 15종이 소장되어 있는데, 서명으로는 『국조방목』 5종, 『국조문과방목』 2종 등이 확인된다.

국조문과방목 중 가장 널리 알려진 책은 규장각도서인 12책본 『國朝榜目』(奎11655)과 8책본 『國朝文科榜目』(奎106)이다. 12책본 『국조방목』은 태조 2년(1393)부터 고종 31년(1894)까지 문과가 시행된 전 기간의 급제자 명단을 수록한 방목으로 1971년에 국회도서관에서 영인하여 간행하였다.⁶⁾ 8책본 『국조문과방목』(奎

은 국조방목으로 지칭되는 경우가 많으며, 시험별 방목은 '各年榜目'으로 일컬어졌다.

4) 정혜은, 2002 『조선시대 武科榜目の 현황과 사료적 특성』, 『軍史』 47; 최경훈, 2015 『동산도서관 소장 사마방목의 현황과 가치』, 『한국학논집』 59; 박현순, 2018a 『조선후기 科擧의 榜目文書와 榜目成冊』, 『조선시대사학보』 85; 박현순, 2018b 『조선시대 科擧 榜目の 편찬과 간행』, 『한국문화』 84.

5) <https://www.nl.go.kr/korcis>. 2020년 5월 6일 검색.

6) 실제로는 마지막 시험인 고종 31년(1894) 식년시방의 병과 2명이 누락되어 있다. 이 방목에는 병과가 49명으로 되어 있으나 명단에는 47명만 기재되어 있다. 누락된 2명의 명단은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2책본 『龍門錄』(古4652.5-3)에 수록되어 있다.

106)은 尹汲(1697-1770)의 장서인이 찍힌 책이다. 태조 2년부터 영조 50년(1774)까지의 문과급제자를 수록하고 있는데, 수록기간은 짧지만 내용상으로는 가장 善本으로 평가되었다. 그리하여 1984년 대학사에서는 이 책을 저본으로 누락된 시기의 방목은 앞의 12책본 『국조방목』으로 보완하여 『國朝文科榜目』을 간행하였다. 두 책에는 역시 규장각도서인 10책본 『국조방목』(奎5202)의 고려시대방목도 추가되어 있다.⁷⁾

두 책은 연구에서도 가장 널리 활용되어 왔다. 와그너와 송준호의 연구 『Wagner & 宋 朝鮮文科榜目』은 12책본 『국조방목』(규11655)을 저본으로 8책본 『국조문과방목』(奎106)과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13책본 『국조방목』(한고조26-47)을 함께 활용하였다.⁸⁾ 국조문과방목을 분석한 연구자들도 편의상 대학사에서 간행한 『국조문과방목』을 이용해 왔다.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제공하는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의 문과방목 텍스트자료도 대학사 간행본과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다.

한편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에서는 이미지자료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현재 연결된 자료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8책본 『국조방목』(K2-3538), 4책본 『국조방목』(K2-3539),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13책본 『국조방목』(한고조26-47) 등이다.⁹⁾ 그런데 이 시스템의 텍스트와 이미지를 비교해 보면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전산화의 저본이 된 자료와 이미지자료의 수록 내용이 서로 다른 것이다.

국조문과방목은 문과급제자의 명단에 기초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본문의 체제, 곧 과거의 명칭인 科名이나 급제자 개개인의 인적 정보를 수록하는 방식은 조금씩 달랐다. 또 수록 형식이 동일하더라도 수록 기간이 다른 경우도 있고, 급제자 개개인의 인적정보에도 출입이 있다.¹⁰⁾ 심지어 널리 활용되어 온 12책본 『국조

7) 영남문화사에서 국회도서관 영인본을 재간행한 것도 있다. 간행본에 대해서는 이재욱, 2017 『조선시대 科擧合格者の 디지털 아카이브 편찬과 인적 관계망 구현』,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79-80면 참조.

8) 송준호, 2001 『조선문과방목 해제-Wagner & 宋 朝鮮文科榜目に 관한 안내문』, 『補註朝鮮文科榜目』.

9) <http://people.aks.ac.kr>, 2020년 6월 18일 현재.

방목』(奎11655)과 8책본 『국조문과방목』(奎106)은 일부 등위가 다른 부분도 있다.¹¹⁾ 국조문과방목은 모두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형식과 내용면에서 각기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이 글은 국조문과방목이 왜 이렇게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가 하는 의문에서 출발하여 여러 이본들을 검토하며 편찬 과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영조·정조대에 국조문과방목이 새롭게 편찬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영조·정조대 국조문과방목 편찬의 특징과 그 학술사적 의의를 살펴보았다.

국조문과방목에 수록된 정보는 크게 개별 시험에 대한 정보와 급제자들의 인적 정보로 대별된다. 이 글에서는 개인의 인물정보에 초점을 맞추어 편찬과정의 특징을 고찰하였다.

2. 예조와 홍문관의 국조문과방목 편찬

1) 예조의 방목등록 편찬

조선은 개국 직후부터 과거를 시행하였고, 시험 때마다 합격자 명단을 공식 문서로 작성하였다. 이 문서는 과거를 주관하는 예조와 병조에 보관하였다. 『승정원일기』, 『조선왕조실록』 등의 연대기자료에서 방목으로 언급되는 자료는 이 문서를 가리킨다. 아울러 15세기 후반부터는 同榜 합격자들이 합격의 기념물로서 문무과 방목과 사마방목을 편찬, 간행하였다. 이 방목은 비공식적인 자료로 합격자들이 나누어 소장하였다.¹²⁾

두 자료가 시험별로 만들어진 것과 달리 국조문과방목은 시험별 방목을 누적적으로 수록한 자료이다. 그러나 국조문과방목이 언제부터 편찬되었는지는 분명하지

10) 국조문과방목 이본들의 체제에 대해서는 이재욱, 앞의 논문, 78-101면 참조.

11) 송준호, 2001 앞의 해제.

12) 박현순, 앞의 논문(2018a·2018b).

않다. 세조 12년(1466)에 왕명으로 의정부, 예조, 성균관에 각각 문과방목 1건씩을 보관하도록 한 일이 있었다.¹³⁾ 이 자료를 등록 형태로 편찬하였다면 각 시험의 급제자를 누적적으로 기록한 국조문과방목이 되었을 법하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 형태를 알 수 없다.

자료상에서 국조문과방목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는 것은 임진왜란 이후이다. 조정에서는 원래 각 시험의 방목인 ‘各年榜目’을 보관하는 한편 謄錄을 편찬하여 과거 업무의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전란 중이던 선조 28년(1595) 당시 병조는 各年榜目を 토대로 무과급제자 8600여명의 명단을 정리하기도 하였다.¹⁴⁾ 그런데 전란 직후에는 관련 자료들이 흩어져 ‘登科錄’을 참고하였다는 기록이 등장한다. 선조 30년(1597)에는 ‘歷年登科錄’을 통해 順懷世子(1551-1563)가 입학할 때 별시를 시행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선조 39년(1606) 重試對舉別試의 연원을 조사할 때는 대신들이 ‘本朝登科錄’, ‘國朝登科錄’ 등을 검토하였다.¹⁵⁾

‘등과록’은 국조문과방목을 가리키는 異稱으로 사용되기도 하였거니와 ‘歷年’, ‘本朝’, ‘國朝’라는 수식어를 통해 이 자료가 시험별 방목을 누적적으로 기재한 국조문과방목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예조에서 謄錄이 남아 있지 않다고 언급한 것을 보면 이 자료들은 국가의 공식적인 기록은 아니었던 듯하다.

당시 민간에는 여러 본의 국조문과방목이 전해지고 있었다. 정조대 黃胤錫은 영광의 이씨문중이 소장한 2책짜리 국조문과방목을 보았는데, 선조 36년(1603)에 李好閔(1553-1634)이 柳希霖(1520-1601)이 소장한 방목을 직접 필사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호민의 아들 李景嚴(1579-1652)은 30여년이 지난 인조 14년(1636)에 다시 그 내용을 증보하고 그 사실을 기록으로 남겼다.¹⁶⁾ 당시 민간에는 조선전기부터

13) 『세조실록』 권39, 세조 12년 8월 4일 계묘 “傳于禮曹曰 自今文科榜目 議政府·禮曹·成均館 各藏一件”

14) 『선조실록』 권70, 선조 28년 12월 26일 갑자.

15) 『선조실록』 권89, 선조 30년 6월 8일 정묘; 『선조실록』 권206, 선조 39년 12월 8일 임인; 『선조실록』 권206, 선조 39년 12월 12일 병오.

16) 黃胤錫(1729-1791), 『頤齋亂藁』 권36, 을사(1785) 2월 2일 임오 “昨日士則伯敬 偕示國朝文科榜目二冊 卽宣祖朝李五峯好閔 萬曆癸卯年 得諸柳希霖 手自傳錄 而丙子其子景嚴褚起

전해 온 국조문과방목이 남아 있었고, 필사와 증보를 거치며 이본들이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 과정을 미루어 보면 이미 임진왜란 이전부터 복수의 국조문과 방목이 편찬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임진왜란 후 조정에서 보관하던 문서는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다시 한 번 흩어져 버렸다. 이후 오랫동안 병자호란이 일어난 인조 13년(1636) 이전의 과거와 관련해서는 근거로 삼을 만한 문서가 없다고 이야기되었다.¹⁷⁾

이즈음 예조에서는 각 시험의 방목을 등서하여 보관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된 『문과방목』(奎34, 4책)이 그것이다. 이 책에는 선조 32년(1599) 7월에 시행된 별시부터 고종 22년(1885) 9월 증광시까지의 방목이 실려 있는데, 제1책의 첫 면에 長方形의 '禮曹之印'이 찍혀 있어서 예조 소장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내용 가운데 광해군은 '光海'로 칭한 반면 仁祖는 '尙上'으로 지칭하고 있어서 실제 이 책을 편찬하기 시작한 것은 인조대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아래에서는 이 책을 '예조본'으로 지칭하였다).

『문과방목』(奎34)은 특이하게 上下 이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단을 모두 기재한 후 다시 첫 면으로 돌아가 2단의 기재를 시작하였다. 현재 4책이 전하는데, 제1책(선조 32-숙종 6)과 제2책(영조 27-정조 2) 사이, 제2책과 제3책(순조 1-순조 34) 사이에 결락된 기간이 있어서 실제의 원본은 6책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제1책은 유사한 필체가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보아 후대에 다시 필사한 것으로 보이며 제2책-제4책은 시험마다 필체가 달라 원본으로 추정된다.

기재형식 상에서도 제1책과 제2-4책은 다른 점이 있다. 제1책에는 급제자의 字나 官歷 등 방목문서에는 기재되지 않은 내용들을 추기한 부분이 많이 있다. 그러나 제2책 이하는 字나 官歷은 기재하지 않고, 급제자의 나이, 부친의 성명, 본관, 거주지 등만 기재하였다.

增錄 着印章曰隱審藏者也 今爲靈光南山林谷諸李氏門契所買 不知自何人轉賣耳”

17) 『숙종실록』 권7, 숙종 4년 8월 25일 계사 “憲府發李台瑞敍用還收之啓曰 … 而至於癸亥(1623)後參榜之說 不但亂前榜目蕩失於前後兵火…”; 『승정원일기』 영조 8년 8월 11일 을축 “又以禮曹言啓曰 … 單慶設科之前例 則乙亥(1635)以前文書散失 無可考據”

여러 층위의 방목들은 그 기재 형식에도 차이가 있었다. 행정용으로 작성된 방목문서나 방목성책에는 급제자의 나이, 본관, 거주지, 부친의 직역과 이름만이 기재되어 있다. 동년록으로 간행된 문무과방목은 방목문서에 기초하되 급제자의 字와 부모의 생존여부, 형제이름을 추가하고 나이는 출생연도로 바꾸어 기재하였다.¹⁸⁾ 이와 달리 국조문과방목에서는 급제 후의 官歷이 주요 항목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예조본 『문과방목』은 제1책은 국조문과방목과 유사하나 제2책 이하는 방목문서를 순차적으로 등서한 일종의 방목등록에 해당된다.

한편 영조 13년(1737) 승정원 우부승지 柳儼은 국왕이 열람하기 편하도록 예조에서 방목문서를 분류, 臚出하여 승정원에 보관하자고 제안하였다. 영조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효종 즉위년(1649)부터의 방목을 등출하도록 하명하였다.¹⁹⁾

이때 편찬된 것으로 보이는 방목이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別試殿試榜』(奎1309), 『庭試文科榜』(奎1308), 『增廣別試文科殿試榜』(奎1310)이다. 세 방목은 각각 효종 즉위년부터 시행된 별시문과, 정시(춘당대시 포함)·알성시·외방별과·증시문과, 증광시문과의 방목을 등서한 것이다. 이 방식을 따르면 식년시 방목도 따로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아래에서는 이 방목들을 ‘승정원본’으로 통칭하였다).

세 방목은 유엄이 등서를 청한 영조 13년(1737)까지는 동일한 필체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이후에는 시험마다 필체가 다르다. 영조 13년에 이전의 방목을 등서한 후 시험이 시행될 때마다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세 책 모두에 ‘禮曹之印’이 찍혀 있는데, 예조본 『문과방목』에 찍힌 장서인과 달리 문서의 진위를 증빙하는 正方形의 間印이다. 이 방목은 예조에서 방목문서를 필사하여 발급한 사본인 것이다. 세 방목은 모두 중간에 추가가 중지되었는데, 정시와 증광시 방목은 영조 39년(1763)까지, 알성시는 정조 13년(1789), 외방별과는 정조 6년(1782) 등으로 중단 시점에는 차이가 있다.

승정원본 방목은 당초 일괄적으로 급제자의 직역과 이름, 나이, 부명, 거주지만

18) 박현순, 앞의 논문(2018a·2018b).

19) 『승정원일기』 영조 13년 3월 21일 기유.

을 기재하다가 영조 35년(1759)부터 본관을 추가하였다. 예조본과 승정원본을 비교해 보면 예조본 제1책에는 누락된 거주지가 승정원본에는 일괄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로 미루어 승정원본은 예조본 『문과방목』이 아니라 예조 소장 방목문서를 직접 등서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예조본 제2책 이하는 승정원본과 동일하나 본관은 3년 늦은 영조 38년(1762)부터 일괄적으로 등장한다.

예조본과 승정원본 국조문과방목은 방목문서를 등서한 책으로 국가의 공식 자료로도 활용되었다. 영조 47년(1771) 국왕이 승지 崔台衡을 拔榜하고 原榜目에 付標하라고 하명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당시 최태형이 급제한 영조 17년 알성시의 방목문서가 소실되고 없었다. 이에 예조에서는 '국조문과방목'에 付標할 것을 청하여 윤허를 받았다.²⁰⁾ 원방목이 없는 상황에서 예조본 국조문과방목이 원방목의 기능을 대신한 것이다.

한편 영조 16년(1740)에는 경종 3년(1723)에 시행된 '討逆庭試'의 과명을 '別科'로 付標하라는 왕명이 내렸다.²¹⁾ 영조는 예조 소장 방목에 부표하라고 하였는데, 현재 예조본 『문과방목』에는 이 부분이 결락되어 있다. 그러나 승정원본인 『정시문과방』에는 해당부분에 '庭試別試'라고 적힌 황색 첩지가 붙어 있다. 승정원본도 왕명의 집행대상이 되는 공적 기록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2) 홍문관의 『국조방목』 편찬

예조에서 문과방목을 따로 등서해 둔 것은 업무에 참조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예조본 『문과방목』은 임진왜란 이후의 방목을 등서한 것으로 그 이전의 자료는 누락되어 있었다. 따라서 그 이전의 前例를 참고하고자 할 때는 다른 자료를 활용해야만 했다.

현종 14년(1673)에 세종대의 일을 고출할 때는 홍문관에 소장된 '登科錄'을 활용하였다는 기록이 보인다. 당시 효종의 능을 여주로 이장하였는데, 홍문관 소장

20) 『승정원일기』 영조 47년 3월 16일 정사.

21) 『승정원일기』 영조 16년 6월 13일 임오.

등과목을 통해 세종의 능을 조성할 때 과거를 시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것이다.²²⁾ 이를 통해 당시 홍문관에는 조선전기부터의 방목을 수록한 국조문과방목이 소장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후 숙종, 영조, 정조대에도 홍문관 소장 방목을 열람한 사례들이 나타나 홍문관에서도 지속적으로 국조문과방목을 소장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전하는 방목 중 홍문관 소장본으로 추정되는 방목은 12책본 『국조방목』(奎11655)이다. 홍문관 소장 도서는 1907년 규장각으로 이관되었는데, 이즈음에 작성된 『弘文館冊目録』(장서각 K2-4673)과 『奎章閣書目』(前弘文館件, 장서각 K2-4636)에는 각각 12책본 『국조방목』이 소장도서로 기재되어 있다. 현재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된 국조문과방목 중 12책본은 『국조방목』(奎11655)이 유일하다. 게다가 이 책은 다른 책들과 달리 녹색계통의 비단으로 장정되어 있으며, 홍문관 관원과 대제학 출신은 이름 곁에 ○와 ●로 별도로 표시하고 있다. 이 책은 국회도서관에서 『국조방목』으로 영인하였고, 태학사 간행 『국조문과방목』에는 영조 50년(1774) 이후 부분이 영인되어 있다(아래에서는 이 책을 홍문관본으로 지칭하였다).

『국조방목』(奎11655)은 태조 2년(1393)부터 고종 31년(1894)까지 시행된 모든 문과의 방목을 수록하고 있으며, 고종대를 ‘當宁朝’로 기재하였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영조대와 정조대 사이, 곧 제7책과 제8책의 편집 방식에 차이가 있다. 제7책 영조대까지는 版心 부분에 ‘英宗 丙子’와 같이 廟號와 연도의 간지를 함께 기재하고 있는 반면 정조대부터는 廟號가 누락되어 있다. 그리고 권수에는 ‘英宗朝’와 같은 방식으로 왕대를 기재하고 있는데, 정조대부터 헌종대까지 3대의 묘호는 원래 기입했던 부분을 도삭하고 종이를 붙여 새로 기입한 흔적이 남아 있다. 고종대를 ‘當宁朝’로 기재한 것으로 미루어 보면 원래는 ‘當宁朝’로 기재하였다가 국왕의 사후에 그 부분을 도삭하고 묘호를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다시 자세히 보면 영조대 부분인 제6책과 제7책 가운데 책의 첫 면과 판심에 ‘英宗’으로 묘호를 적은 부분에서 ‘英’字는 모두 원래 썼던 글자를 지우고

22) 『승정원일기』 현종 14년 8월 23일 경신 “壽興曰 … 且英陵卜用之後 亦有慶科矣 上曰 果有是耶 斗寅曰 登科錄 在弘文館 使之考出 何如 上曰 考出 可矣”

그 위에 다시 쓴 것으로 판단된다. 남아 있는 흔적을 종합하면 원래는 '當'字라고 기재하였는데, 뒤에 '當'자를 지운 후 그 위에 '英'字를 쓰고, '寧'자는 획을 더하여 '宗'자로 고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비해 경종 이전의 묘호는 고친 흔적이 없다. 따라서 이 방목은 영조대 어느 시점에 정서한 후, 그 뒤에 계속 추가하여 고종 때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철종의 경우는 처음부터 '철종조'로 기재하여 고종대에 기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홍문관 소장본은 예조에서 편찬한 『문과방목』 및 승정원 소장본과는 기재 형식이 다르다. 예조본과 승정원본이 방목문서를 등서한 것에 비하여 홍문관본 『국조방목』은 고유한 형식으로 공간을 분할하여 방목문서에 기재되지 않은 四祖와 妻父, 別號, 급제 이후의 官歷, 생원·진사시 이력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각각의 시험에 대해서도 시험의 書題나 試官까지 자세히 기재하였다. 다만 마지막 권인 제12책(고종 25-고종 31)은 책의 크기도 다르고, 기재 형식도 예조본·승정원본과 같이 방목문서를 등서한 형태이다.²³⁾

한편 이 책은 제1책인 태조대부터 제8책인 정조대까지는 제1권-제18권으로 권수가 연결되지만 제9책인 순조대는 다시 9권부터 시작된다. 정조대가 제8책이라는 점으로 미루어 보면 순조대의 권수는 책수를 옆두에 두고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권수는 연결되지 않지만 본문의 기재 형식이 동일한 체제를 취하고 있으며, 비단 장정과 제첩도 동일하다.

현종대부터 홍문관에서 국조문과방목을 소장한 것이 확인되기는 하지만 당시의 소장본이 현전하는 12책본 『국조방목』과 동일한 형식이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현전하는 홍문관본은 영조대에 정서한 것인데 당시 민간에서 국조문과방목을 새롭게 편찬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홍문관본 역시 이 때 새로 편찬하였을 가능성이 커 보이기 때문이다.

이 책과 동일한 형식을 취하고 있는 책으로는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7책본 『등과록』(고4650-7, 태조 2-영조 30)과 일본 동양문고 소장 13책본 『등과록』(태조

23) 제1책-제11책은 42.5×28.0cm인데 비해 제12책은 48.0×28.0cm로 세로가 6.5cm 더 길다.

2-순조 19)이 있다. 묘호를 고쳐 쓴 흔적으로 볼 때 7책본 『등과록』은 영조대, 표제가 ‘국조방목’인 동양문고본은 정조대에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²⁴⁾

예조본과 승정원본 국조문과방목이 등록의 일종이었던 것과 달리 홍문관본은 인적 정보를 추가하여 가공한 편찬자료로 민간에 소장된 국조문과방목과 그 성격이 유사하였다. 따라서 법적효력을 지니는 공적기록으로는 보기 어렵다. 하지만 예조본과 승정원본이 시기적인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전기의 전례를 참고할 경우 홍문관본을 참조하기도 하였다. 홍문관본은 전고서로 이용되었던 것이다.

한편 정조대 설치된 奎章閣 西庫의 도서목록에도 국조문과방목이 계속 수록되어 있다. 정조대에는 8책본 『국조문과방목』이 보이며,²⁵⁾ 고종대 『內閣藏書彙編』에는 국왕이 새로 하사한 도서의 목록 가운데 10책본 『국조방목』이 보인다. 또 1907년 무렵 편찬된 『奎章閣書目』(奎11760) 중 『奎章閣樓下庫冊目錄』에는 8책본 『국조문과방목』과 10책본 『국조방목』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규장각에도 별도의 국조문과방목이 소장되어 있었던 것이다.

현재 규장각도서 중 8책본은 尹汲의 장서인이 있는 『국조문과방목』(奎106, 태조 2-영조 50), 10책본은 ‘東萊世家’ 장서인이 있는 『국조방목』(奎5202, 태조 2-고종 14)이 유일하다. 두 책은 민간에서 편찬되어 각각 정조대와 고종대에 규장각에 들어 온 것으로 추정된다.

3. 민간의 국조문과방목 편찬

앞서 李好閔이 선조 36년(1603)에 柳希霖이 소장하고 있던 국조문과방목을 필

24) 일본 동양문고본은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http://kostma.korea.ac.kr>)를 통해 이미지 자료를 볼 수 있다.

25) 정조대 편찬된 서고의 도서 목록은 모두 3종이다. 이 중 『西庫藏書錄』(奎7717)에는 『국조방목』 7책과 『문과방목』 1책이 수록되어 있는데, 『西序書目: 籤本』(1989 『규장각』 12, 영인 수록)과 『西序書目: 草本』(서울대 중앙도서관 소장)에는 『국조문과방목』 8책으로 수록되어 있다.

사하였고, 그 아들 李景嚴이 이를 증보하였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물론 이들만이 국조문과방목을 소장하고 증보한 사람들은 아니었다.

『승정원일기』나 문집에는 관료들이 국정 수행과 관련하여 국조문과방목을 열람하고 참고한 사례들이 다수 등장한다. 이들이 본 책이 예조나 홍문관 소장본인지 아니면 개인 소장본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개인적으로 방목을 열람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다수는 개인 소장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영조 19년(1743) 吳光運의 언급에 따르면 민간에도 국조문과방목이 다수 소장되어 있었다.²⁶⁾

한편 숙종대 玉世寶(1649-?)는 안동출신인 영일현감 安鍊石(1662-1730)의 집에서 『국조방목』 전질을 보았다.²⁷⁾ 안연석이 영일현감으로 불리던 숙종대 말 즈음 지방에도 국조문과방목이 소장되어 있었던 것이다.

현전하는 방목 중에도 숙종대 이전에 편찬된 것으로 보이는 방목들이 있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國朝榜目』(想白古351.306-B224mn-1393/1494)은 1책만 남은 영본으로 수록 시기는 태조 2년-성종 25년(1494)이다. 이 방목에는 定宗을 '恭靖', 端宗을 '魯山君'으로 칭하고 있어서 적어도 저본은 정종의 묘호가 결정된 숙종 7년(1681) 9월 이전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3책본 『國朝榜目』(K2-3541)은 태조 2년-숙종 43년(1717)의 방목을 수록하였는데, 본문에서 肅宗을 '숙상'으로 칭하고 있다. 하버드 예칭도서관 소장 『國朝榜目: 戊午[1558]八月至甲子[1624]十一月』은 본문에 '仁祖'가 언급되어 있어 효종대 이후에 필사한 것으로 보이나 형식 상 앞의 2종과 유사하고, 인조대 급제자의 관력이 대부분 누락되어 있어서 17세기 후반에 필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26) 『승정원일기』 영조 19년 3월 27일 신사 “上曰 … 國朝榜目 誰所輯也 光運曰 國朝榜目 士大夫家 多有之 而禮曹 亦有一通矣”

27) 李栽(1657-1730), 『密菴集』 권14, 『凝溪玉先生狀後敘』 “最後先生七世孫國子上庠世寶 偶得國朝榜目全本於安知縣鍊石(1662-1730)家”

〈표 1〉 본고 검토 국조문과방목 목록 (수록 기간 순)

번호	소장처	도서번호	서명	책수	수록 기간	비고
1	규장각	想白古 351.306-B224mn -1393/1494	國朝榜目	1책	태조 2년-성종 25년(1494)	상백본 2책 이후 결
2	한중연 장서각	B13LB-8	龍榜會錄	1책	태조 2년-중종 39년(1544)	2책 이후 결
3	하버드엔칭 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제공	國朝榜目 : 戊午 [1558]八月至甲子 [1624]十一月	1책	명종 13년(1558) -인조 2년(1624)	
4	한중연 장서각	K2-3541	國朝榜目	3책	태조 2년-숙종 43년(1717)	
5	"	PB13LB-15	國朝榜目	1책	효종 1년(1650) -영조 1년(1725)	제3책 외 결
6	규장각	古4650-26	國朝文科榜目	5책	태조 2년-영조 19년(1743)	6책 이후 결
7	"	古4650-11	登科錄	7책	태조 2년-영조 30년(1754)	홍문관본계열
8	"	海士 필9	國朝榜目	6책	태조 2년-영조 40년(1764)	동래세가본 계열 제6책 결
9	"	奎106	國朝文科榜目	8책	태조 2년-영조 50년(1774)	윤급본
10	"	奎1309	別試殿試榜	1책	효종 즉위년(1649) -영조 35년(1759)	승정원본
11	"	奎1308	庭試文科榜	1책	효종 즉위년(1649) -영조 39년(1763) * 정시 기준	승정원본
12	"	奎1310	增廣別試文科殿試 榜	1책	효종 1년(1650) -영조 39년(1763)	승정원본
13	국립 중앙도서관	古6024-6	國朝榜目: 太祖-英 宗, 1-7	7책	태조 2년-정조 18년(1794)	
14	한중연 장서각	K2-3538	國朝榜目	8책	태조 2년-정조 21년(1796)	동래세가본 계열
15	일본 동양문고	고려대 해외한 국 학 자료 센터 제공	登科錄	13책	태조 2년-순조 19년(1819)	홍문관본계열
16	규장각	古4650-33	國朝文榜	7책	태조 2년-순조 26년(1826)	
17	한중연 장서각	K2-3540	國朝榜目	11책	태조 2년-헌종 2년(1836)	이만운본계열
18	규장각	奎5202	國朝榜目	10책	태조 2년-고종 14년(1877)	동래세가본
19	"	奎34	文科榜目	4책	선조 32년(1599) -고종 22년(1885)	예조본 제2책 · 제4책 결

20	"	古4650-97	國朝榜目	13책	태조 2년-고종 26년(1889)	이만운본
21	"	古4652.5-3	龍門錄	2책	철종 1년(1850) -고종 31년(1894)	
22	서울대 중앙도서관	일사 351.306.B224	國朝榜目	10책	태조 2년-고종 31년(1894)	동래세가본 계열
23	국립 중앙도서관	한古朝26-47	國朝榜目.卷1-13	13책	태조 2년-고종 31년(1894)	이만운본계열
24	규장각	奎11655	國朝榜目	12책	태조 2년-고종 31년(1894)	홍문관본
25	한중연 장서각	K2-3539	國朝榜目	4책	정조 22년(1798) -고종 31년(1894)	홍문관본 후사

그러나 필자가 검토한 방목들은 대다수가 영조·정조대에 편찬되었거나 영조·정조대에 편찬된 방목을 저본으로 이후의 방목을 추가한 자료이다.²⁸⁾ 영조·정조대에 방목을 편찬했다고 알려진 인물들도 있다. 李瀾(1681-1763)의 재종질인 李觀休(1692-?)는 『국조방목』을 증보하여 10권을 소장하고 있었다.²⁹⁾ 또 黃胤錫·李萬運과 어울렸던 李燾은 국조문과방목의 편찬을 자신의 사업 중 하나로 삼았다.³⁰⁾ 관서 尹汲(1697-1770)과 『동국문헌비고』를 증보한 李萬運(1723-1797)처럼 편찬 방목이 확인되는 경우도 있다.

윤급은 '榜史'로 자부하며 『국조문과방목』과 문과급제자들을 성관별로 분류 정리한 『國朝文科姓譜』(일명 科譜)를 편찬하였다.³¹⁾ 현재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는 윤급이 편찬한 것으로 보이는 『국조문과방목』(奎106, 8책)이 소장되어 있다. 8책 모두 첫 면에 윤급의 장서인인 '海平世家尹汲景孺號近菴印' 등이 찍혀 있다. 이 책은 태학사에서 간행한 『국조문과방목』에 영인되어 있다.

그런데 윤급이 영조 46년(1770)에 사망한 데 비하여 이 책에는 태조 2년(1393)

28) 본고에서는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자료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국립중앙도서관 등에서 이미지자료를 제공하는 국조문과방목을 검토하였다.

29) 李瀾(1681-1763), 『星湖全集』 권50, 『國朝榜目序』.

30) 황윤석, 『이재난고』 권38, 병오(1786) 6월 17일 기축.

31) 趙鎮寬(1739-1808), 『柯汀遺稿』 권7, 『吏曹判書近菴尹公-汲-諡狀』, “修整國朝榜目 包羅四百年人物 刊謬正譌 間寓衰鉞 常自許以榜史 又作譜而羽翼之 要爲有用之書焉”

부터 영조 50년(1774) 식년시까지의 방목이 실려 있으며, 내용 중에는 정조대 초반에 있었던 일까지도 기재되어 있다. 8책 전체가 정연하게 한 필체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 윤급이 편찬하기는 하였으나 정서된 것은 그의 사후였다고 판단된다. 이 책이 세간에 전해졌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필자가 확인한 규장각, 서울대 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방목 중 윤급 소장본과 동일한 체제를 가진 방목은 없었다³²⁾(아래에서는 윤급의 장서인이 있는 『국조문과방목』을 ‘윤급본’으로 지칭하였다).

반면 『국조문과성보』 2책은 ‘科譜’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윤급이 영조 30년(1754) 개성유수로 내려간 후에 이 책이 세상에 전해졌다고 하는데, 황윤석은 徐命膺과 洪麟漢의 집에서 이 책을 보았고, 함평 출신인 헌남 李弘稷(1705-1796)과 정읍 출신인 진사 南彥極(1713-?)도 이 책을 소장하고 있었다.³³⁾ 정조 9년(1785) 무렵 규장각 西庫의 소장 도서 목록에도 국조문과성보 2책본과 3책본 두 질이 소장되어 있어서 국조문과성보가 규장각에까지 전해진 양상도 볼 수 있다. 윤급이 편찬한 『국조문과성보』는 필사를 통해 경향으로 널리 전파되고 있었던 것이다. 아울러 정조 22년(1798)까지의 급제자를 수록한 『국조문과성보』 2종은 윤급본과 성씨의 수록순서를 달리하여 정조대에 새로운 科譜가 편찬되었다는 것도

32) 윤급 소장본은 분주의 오른쪽에 사조와 처부를 기재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이 점에서 가장 유사한 책은 규장각 소장 5책본 『국조방목』(古4650-26)이다. 그러나 전체 항목의 구성이나 기재 위치가 다르다.

33) 황윤석 『이재난고』 권6, 병술(1766) 4월 초6일 을사 “至竹洞 先訪徐正言浩修 相話 有頃 朴上舍 乃至 又與同訪徐令 徐令方病强起 相話 余偶見案有科譜[尹判書汲 以國朝登科錄 隨姓類編] 詣見之 則其別姓分貫 大抵多混信乎述作之難也”; 같은 책, 권12, 기축(1769) 3월 21일 갑진 “轉訪洪判書[洪麟漢]于崇洞 …又閱科譜一帙二册 乃是尹尙書汲 留守松京時 出其所輯 傳寫行于世 蓋以世所稱東國榜目者 逐姓分貫而編之 但一人之聞見有限 或異貫而誤合 或同貫而誤分 甚或誤認貫姓淹博之名 豈易得哉”; 같은 책, 권4, 갑신(1764) 3월 23일 갑술 “欲訪李獻納季長 得見科譜 此册卽尹判書汲所輯 而以登科錄所載姓氏 類分成譜 甚可觀者 故意欲見之 旋聞主人不在而止”; 같은 책, 권21, 병신(1776) 2월 초9일 신해 “南進士 送付科譜二册 要余傳去”; 같은 책, 권21, 병신년(1776) 4월 “答南進士丈彥極狀 … 示來科譜 非不一再繙閱 而無力傳寫 茲被推還 幸他日更容率惠 區區之望也 丙申四月二日 侍慈生 黃胤錫拜手”

알 수 있다.

윤급의 장서인이 찍힌 『국조문과성보』(2책, 古4650-148)도 현재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다. 『국조문과방목』과 마찬가지로 전체가 한결같은 필체로 기재되어 있는데, 안동김씨의 사례를 보면 마지막 인물이 정조 11년(1787)에 급제한 金裕己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 책 역시 윤급의 사후에 정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³⁴⁾

〈표 2〉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국조문과성보』 * [] 서명과 표제가 다른 경우의 표제

도서번호	서명	수록 기간	최소수록성관	비고
奎1548 v.1-3	國朝文科姓譜 [제1책 科譜]	태조-영조 50년(1774)	김해김씨	
奎3154 v.1-2	國朝文科姓譜 [科譜]	태조-영조 35년(1759)	김해김씨	李湫(1722-1781) 장서인
奎810 v.1-2	國朝文科姓譜	태조-정조 22년(1798)	안동김씨(구안동)	
奎1135 v.1-2	國朝文科姓譜	"	안동김씨(구안동)	正祖 장서인
古4650-148 v.1-2	國朝文科姓譜	태조-정조 11년(1787)	김해김씨	尹汲 장서인

정조 2년(1778) 李萬運(1723-1797) 역시 국조문과방목을 편찬하고 있었다. 황윤석은 당시 6책을 빌려 보고 관심있는 인물들에 대한 기록을 일기에 필사해 두었다.³⁵⁾ 황윤석이 필사한 기록과 현전하는 방목을 비교해 보면 이만운이 편찬하고

34) 이 책은 1932년 12월 16일 경성제국대학 도서관에서 서적상 李聖儀에게 구입한 책으로 원래 규장각도서에서 포함된 책은 아니다. 윤급은 슬하에 아들 尹得毅(1730-?)와 李翊永에게 시집간 딸을 두었다. 윤득의는 부친의 사후 문과에 급제하여 수찬, 승지 등을 지내기도 하였으나 정조 즉위 후 4년 여 동안 放逐鄉里의 처벌을 받았고, 정조 4년 10월 김해 부사로 나갔다가 다시 1년간량 김해에 유배되어 있다 풀려났다. 그 뒤의 행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윤득의가 정조대에 관직에서 물러나 있으면서 부친의 遺業을 정리하여 정서하였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35) 황윤석, 『이재난고』 권24, 무술(1778) 4월 초7일 “送書于李萬運甫 請借輯校國朝榜目則方赴堤川未歸 其子儒準答書送榜目六冊 … 今錄國朝榜目中可考如左 國朝榜目 ○太祖癸酉榜 乙科丙科同進士 … 同進士黃鉉 洪武壬子生 己巳生員魁 永樂丁亥重試 行大司成 有經行為

있던 방목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13책본 『國朝榜目』(고4650-97)과 형식과 수록 내용이 일치한다(아래에서는 이 책을 ‘이만운본’으로 지칭하였다).³⁶⁾

이 책은 태조 2년부터 고종 26년(1889)까지의 방목을 수록하고 있는데, 서두에 18개 조항의 범례를 수록하여 편집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편찬자는 別卷으로 高麗榜目を 편찬하였고, 禮曹榜目の 명단을 기준으로 7-8종의 민간 소장 국조문과방목을 참조하여 십수년에 걸쳐 이 책을 완성하였다.³⁷⁾

이 책은 표지에 수록 기간을 적고 있는데, 제10책의 표지에는 ‘英宗甲戌 至今上癸卯’, 제11책의 표지에는 ‘今上甲辰 至今上丙辰’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수록내용에 비추어 보면 수상은 정조를 가리키며, 가장 늦은 해인 ‘금상병진’은 정조 20년(1796)이다. 그리고, 제1책에서 제11책의 표지에는 전체 책수가 11책으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당초에는 정조 20년(1796) 무렵까지의 방목을 11책으로 편찬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만운이 정조 22년(1797)에 사망한 점도 이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러나 그 후에도 계속 방목을 추가하여 실제 제11책에는 헌종 2년(1836)까지의 방목이 실려 있다. 그리고, 제12책의 표지에는 ‘今上丁酉’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해는 헌종 3년(1837)이다. 제13책은 내지에 ‘當宁朝’라고 되어 있는데, 당저는 고종을 가리킨다. 그리고, 각 왕대의 처음에 묘호를 기록한 부분에서 제11책의 ‘正宗’, ‘純祖’, ‘憲宗’, 제12책의 ‘憲宗’은 원래부분을 도삭하고 새로 기입한 흔적이 남아 있다. 따라서 이 책은 정조대 이래로 순조, 헌종, 고종대에도 계속 ‘今上’ 혹은 ‘當宁’로 칭하며 내용을 증보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³⁸⁾ 국조문과방목의 편

世師儒 平海人 父有定 工曹判書 外祖鄭云敬 忠惠王辛未榜 … 丙科 李淑蕃 癸丑生 贊成有罪安置死 安城人 父伺 妻父鄭摠 辛禍丙辰榜”

36) 이만운본은 18개 조항의 범례가 있으며, 마지막에 부친 등의 문과합격 이력을 ‘忠惠王辛未榜’과 같은 형식으로 기재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37) 『國朝榜目』(古4650-97) 범례 “一 禮曹榜目 既是公家文獻 則所當一一遵書 而本曹掌故 既極鹵莽 其所懸註 甚多註誤 故參之以私家藏本 凡經七八本 積十數年 始克成編 … 一 各人碑誌及諸家譜牒 稱以文科者甚多 而漏於禮曹榜目 則不敢輕可載錄”

38) ‘철종’의 경우 묘호를 그대로 기재하여 고종대 이후에 증보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책은

찬이 여러 세대에 걸쳐 家學으로 전승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 방목과 저본이 동일한 방목으로는 고종 31년 방목까지 수록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13책본 『국조방목』(국립 한古朝26-47)과 헌종 2년(1836)까지 수록한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11책본 『국조방목』(K2 3540)이 있다. 장서각 소장 11책본의 마지막과 규장각·국립중앙도서관 소장 13책본의 제11책을 비교해보면 마지막에 동일하게 헌종 2년 2월 중시방이 실려 있다. 해당 방목의 현황으로 미루어 장서각 소장본은 헌종 때,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은 대한제국기에 필사한 것으로 19세기에도 이만운본 국조문과방목이 유통되고 증보된 정황을 보여준다.³⁹⁾

이만운은 한걸음 더 나아가 『고려사』와 문집 등을 토대로 고려시대 급제자 1,160명이 수록된 고려시대방목을 편찬하기도 하였다.⁴⁰⁾ 위의 13책본 『國朝榜目』(古4650-97) 범례에서도 '麗朝榜目'을 별권으로 묶었다고 밝히고 있다.

고려시대 방목을 수록한 책은 9종을 확인하였는데, 동일한 내용을 수록한 경우를 제외한 이본은 6종이며, 이 중 3종이 별책으로 되어 있다.⁴¹⁾ 그런데, 속종을 '금상'으로 칭하고 있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3책본 『國朝榜目』(K2-3541)에도 '麗朝榜目'이라는 제목으로 15회에 걸친 고려말의 방목이 실려 있다. 이만운의 고려방목 편찬도 기존의 편찬본에 기초하여 진행되었을 것이다.

이외에도 현전하는 국조문과방목 중에는 영조·정조대에 편찬한 것으로 보이는 책들이 있다. 『등과록』(규장각, 古4650-11) 7책본은 홍문관본을 필사한 책으로 영

각권에 목차를 수록하였는데, 그 필체는 정조, 순조, 헌종의 묘호를 기록한 필체, 고종대 이후 방목을 기록한 필체와도 동일하다. 따라서 목차와 묘호를 추기한 것은 고종대 이후로 판단된다.

39)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본은 정조의 경우 제10책에서는 '순上', 제11책에서는 '정조'로 기재하였고, 순조는 철종 8년(1857) 개정되기 이전의 묘호인 '純宗', 헌종은 '聖上'으로 기재하여 헌종대에 필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은 인찰지의 관심에 '親衛第一聯隊第三大隊'라고 되어 있어서 필사 연대가 친위대에 연대를 설치한 건양 1년(1896) 4월 이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40) 李德懋(1741-1793), 『靑莊館全書』 권58, 叢葉記[五] 『國朝科目總數』; 李德懋, 『靑莊館全書』 권60, 叢葉記[7] 『高麗榜眼』.

41) 현전하는 고려시대 방목에 대해서는 이재옥, 앞의 논문, 64-67면 참조.

조 30년(1754)까지의 방목이 수록되어 있다. 홍문관본과 마찬가지로 묘호를 기재한 부분에 글씨를 지우고 '英宗'이라고 기입한 흔적이 있다. 홍문관의 사례에 비추어 보면 원래는 '當宁'로 기입되어 있었을 것이다.

또 5책본 『國朝文科榜目』(규장각, 古4650-26)은 영조 19년(1743)까지의 방목을 실었는데, 역시 영조대 방목의 첫머리에 묘호를 기재한 부분을 도삭하고 '英宗'이라고 기입한 흔적이 있다. 제1책에 수록된 『國朝科目摠數』에 영조대에 시행된 과거 횟수가 모두 기재된 것으로 보아 정조대까지 편찬되었을 가능성이 커 보이지만 현재는 확인되지 않는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7책본 『國朝榜目:太祖-英宗,1-7』(古6024-6)은 정조 18년(1794) 2월 정시까지 실려 있는데, 제1책의 『國朝文科都數總目』에 영조대까지의 횟수만 기재되어 있어서 정조대까지 편찬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본문에 '正宗'이 언급되어 있어서 후사본일 가능성이 크다.

한편 零本인 6책본 『국조방목』(규장각, 海士 필9, 7책 중 제5책 결)은 영조 40년(1764)까지의 방목을 수록하고 있다. 이 방목은 책별로 필체가 달라 후대에 필사한 것으로 보이나 영조 40년 방목에 이어서 광해군 13년(1621) 등 罷榜된 시험의 방목을 기재하고 있어서 그 저본은 영조대에 편찬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책에는 6조의 범례가 실려 있는데, 동일한 범례가 수록된 책이 3종 더 확인된다. 그러나 수록 시기는 제각각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8책본 『국조방목』(K2-3538)은 정조 20년(1796),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10책본 『국조방목』(奎5202)은 고종 14년(1877), 서울대 중앙도서관 소장 10책본 『국조방목』(일사 351.306.B224)은 고종 31년(1894)까지의 방목이 수록되어 있다. 이 중 2종은 위의 책과 동일하게 제7책의 영조 40년(1764) 방목 뒤에 광해군 13년(1621) 방목 등 파방된 방목이 수록되어 있다.⁴²⁾ 영조대에 만들어진 저본을 토대로 그 형식에 따라 새로운 방목을 추가하여 각기 수록 연대가 다른 네 가지 방목이 현전하게 된 것이

42) 규장각도서 10책본 『국조방목』(奎5202, 태조 2-고종 14)과 장서각 소장 8책본 『國朝榜目』(K2-3538, 태조 2-정조 21)의 제7책도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다. 서울대 중앙도서관 소장 10책본 『國朝榜目』(일사 351.306.B224, 태조 2-고종 31)은 이 부분을 제외하고 새로 편집하였다.

다(아래에서는 '東萊世家' 장서인이 있는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10책본 『國朝榜目』(奎5202)을 '동래세가본'으로 지칭하였다).

19세기에도 새롭게 편찬된 방목이 있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2책본 『龍門錄』(古4652.5-3)은 처음부터 철종·고종대의 방목만 수록한 책으로 특징적으로 '恩賜'라는 항목을 두고 있다. 다른 방목에서 頭註나 細註로 직부이력을 기록한 것과 다른 점이다. 7책본 『國朝文榜』(古 4650-33)은 태조 2년-순조 26년(1826)의 방목으로 권말에 '純宗朝上'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그 이후가 결락된 零本으로 판단된다. 철종 8년(1857) 純祖로 묘호를 개정한 것에 비추어 볼 때 헌종·철종 연간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동래세가본과 형식이 유사한 면이 있어서 새로 편찬한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저본을 필사한 것인지 불분명한 면이 있다. 그러나 이외에 19세기 방목을 수록한 국조문과방목은 영조·정조대에 편찬된 방목의 형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서 영조·정조대가 국조문과방목의 편찬에서 하나의 전기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영조·정조대 국조문과방목 편찬의 특징과 '인물정보학'

1) 항목의 증가와 기재 형식의 체계화

임진왜란 직후에 국조문과방목이 전해지고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임진왜란 이전부터 국조문과방목이 편찬되어 왔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후대에 편찬된 자료들도 일차적으로는 이 자료에 기초하여 새로운 방목을 추가한 형태이다.

현전하는 국조문과방목 가운데 숙종대 이전에 편찬된 것으로 보이는 방목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國朝榜目』(想白古351.306-B224mn-1393/1494, 태조 2-성종 25)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국조방목』(K2-3541, 태조 2-숙종 43)이 있다. 이외에 미국 하버드엔칭도서관에 소장된 『국조방목』 1책(명종 13-인조 2)도 형식이 유사하여 17세기 후반에 편찬된 것으로 보인다.

이 세 종의 방목도 기재된 형식이나 내용이 서로 다르다. 그러나 인적 사항에 대한 기술이 소략하다는 공통점도 있다. 비교적 많은 내용이 기재된 세종 23년(1441) 급제자 姜希顔과 명종 13년(1558) 급제자 尹根壽의 사례를 보면 아래와 같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국조방목』(想白古351.306-B224mn-1393/1494)

進	姜希顔	字景愚 碩德子 號仁齋 集賢直提 文雅擅一時篆 隸眞草與畫妙 當代第一 甲申十月發背腫卒
---	-----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국조방목』(K2-3541)

進	姜希顔	景愚 篆隸眞草與畫妙 文雅擅世
---	-----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국조방목』(K2-3541)

幼	尹根壽	子固 斗壽弟 月汀 府院君 典文 八十一卒
---	-----	-----------------------

하버드옌칭도서관 『국조방목』

(幼學)	尹根壽	子固 號月汀 諡號文貞 忭之子 斗壽弟
		吏郎 三司 海平府院君 典文衡 有集

세 책을 비교해 보면 우선 장서각 소장본은 다른 두 방목에 비해서도 내용이 소략하고 行의 구분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기존 방목에서 일부를 발췌하여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두 방목은 비교적 내용이 자세한 편이다. 강희안에 대한 정보는 字, 부친, 별호, 관력, 世評, 卒記로 구성되어 있고, 윤근수에 대한 정보는 자, 별호, 시호, 부친, 형, 관력, 문집유무가 기재되어 있다. 두 책에 실린 字, 부친, 형제, 별호, 시호, 관력, 세평, 줄기, 문집유무 등이 당시의 국조문과방목에서 수록하고자 한 내용이었을 것이다.

이상의 내용들은 영조·정조대에 편찬된 국조문과방목에도 대부분 수록되어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새로운 내용들도 추가되어 있다. 영조·정조대 편찬된 대표적인 국조문과방목에서 姜希顔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홍문관본

進	姜希顔○	景愚	仁齋	黃監翰	戊申進		晉州人
		戊戌	父碩德 祖准伯 曾著 外沈溫 妻父金仲行			希孟兄	

윤급본

進	姜希顔○	景愚	父碩德 祖准伯 曾著 外沈溫 妻父金仲行 希孟兄 [世宗得寶玉 命公篆體天牧民永昌後嗣八字 爲御寶]	晉州人
		戊戌	翰林嘉善副學 篆隸眞草與畫俱妙當代第一 四十八 金壽寧撰碑 [夢入官府 諸公列坐間有虛席 見其標題 卽姜希顔也 是歲卒]	號仁齋

동래세가본

戊午	進士	弘姜希顔	景愚	篆隸眞草與畫具妙當代第一 號仁齋 有文名 直提 甲申背腫卒	晉州人	父碩德
			乙亥			

이만운본

進士	姜希顔	景愚	戊午司馬	監司吏曹堂郎直學舍人 翰林 有文名 篆隸眞草與畫伶 爲當世第一 乙酉卒	晉州人	父碩德 大憲 叔眞德 丁未榜 祖准伯 辛禡丙辰榜 外祖沈溫 辛禡丙寅榜
		戊戌	仁齋			

이상 4종의 국조문과방목에 수록된 강희안에 대한 정보는 각각 다르다. 그러나 이전의 책들에 비해 많은 정보들이 추가되었다는 공통점도 있다. 추가된 내용을

종합하면, 생년, 四祖와 妻父, 진사시 합격연도, 묘갈명, 선조들의 급제연도, 본관 등이 새로 등장하며, 홍문관(집현전) 경력은 기호 ○나 朱筆로 쓴 '弘'字로 기재되어 있다.

<표 3>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대표 방목 중 姜希顔 수록면

상백본	홍문관본	윤급본	동래세가본	이만운본
想白古 351.306-B224mn	규11655	규106	규5202	고4650-97
				

그 사이에는 공통된 정보도 있으나 각각의 방목에만 등장하는 특징적인 정보도 있다. 가령 사조는 홍문관본과 윤급본에만 등장하며 부, 조, 외조의 급제방은 이만운본에만 등장한다. 또 윤급본·이만운본·동래세가본에는 모두 世評을 수록하고 있으나 홍문관본에는 빠져 있다. 윤급본에는 다른 본에서 보이지 않는 관련 일화가 추가되어 있으나 다른 방목에 모두 등장하는 진사시 합격연도가 빠져 있다. 편찬자의 관심과 지향에 따라 정보를 취사선택하여 정리한 것이다.

보다 주목되는 점은 각 방목이 서로 다른 특징적인 형식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편찬자는 먼저 자신이 기재할 항목을 정하고 지면을 분할하여 정해진 자리에 정해진 정보를 기재하였다. 물론 상백본이나 하버드엔칭도서관본에서도 分註의 오른 면에는 인적사항, 왼쪽에는 官歷, 하단에 부친명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지면을

분할하였다. 그러나 정보량이 늘어나면서 지면의 분할도 보다 세밀해졌다.

이에 따라 범례도 등장하였다. 윤급본의 경우 범례에 다음과 같은 편찬 방식이 제시되어 있다.

“성명의 위에 稱謂 -幼學, 進士와 같은 것이다 -를 쓴다. 이름 아래에는 두 줄로 字와 출생년도를 쓴다. 오른쪽 줄에는 부·조·증조·외조·처부를 쓴다. 문과에 급제하였으면 작게 붉은 원을 그려 구분한다. 遠祖와 兄弟·子孫·叔姪·傍祖·傍孫·再從·三從에 登科者가 있으면 가까운 사람부터 써서 어떤 친척과 어떤 관계인지 구별한다. 왼쪽 줄에는 官爵과 諡號, 重試, 拔英試, 登俊試, 進賢試, 事蹟과 墓文 찬술자를 쓴다. 말단에는 두 줄로 本貫과 별호를 쓴다. 直赴와 생원진사시에 합격한 연도, 졸년 등은 빈 곳에 적당히 쓴다.”⁴³⁾

윤급은 이름 이하의 공간을 3단으로 나누어 구성하고 각각은 쌍행으로 구성하여 첫 단에는 자와 출생년도, 둘째 단에는 사조·처부와 급제한 형제·친족, 관력·행적, 마지막 단에는 본관과 별호를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상의 내용이 윤급이 구성한 기본 항목이다. 이 중 중심이 되는 부분은 둘째 단으로 오른쪽에는 가족·친족관계, 왼쪽에는 급제자 개인의 행적을 배치하였다. 이외에 직부, 생원진사시에 합격한 연도, 졸년 등은 부가적인 정보로 빈 곳에 쓰도록 하였다. 다만 이 부분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만운본의 편찬자는 윤급본과는 다른 형식을 취하였다. 역시 범례가 함께 실려 있는데, 지면의 분할은 다음과 같은 방식을 따랐다.

“위쪽: 큰 글씨로 먼저 稱號를 쓰고, 다음에 이름을 쓴다. 分註로 왼쪽에 字를 쓰고 오른쪽에 생년을 쓴다. 왼쪽에 ‘某年司馬’라고 쓰고, 오른쪽에 別號를 쓴다. 重試와 文臣別科, 卒記, 80이상 장수, 職名, 勳封, 兼職, 名宦, 諡號, 사화에 연루되거나 사형을 당한 경우, 귀양 가서 죽은 경우, 文廟에 종사되거나 廟庭에 配享된 경우는 좌우에 적당

43) 『國朝文科榜目』(규장각,奎106) 凡例 “姓名上書其稱謂-幼學進士之類- 名下雙書字與年甲右行書父祖曾祖外祖妻父 而有文科則以小朱圈別之 遠祖及兄弟子孫叔姪傍祖孫再三從登科者從近書之 以別某親之某屬 左行書爵諡重試拔英登俊進賢等試事蹟及墓文所撰人 末斷雙書本貫別號 直赴及生進之年卒年 隨空處書之”

히 쓴다. 등과한 후에 처음 제수된 관직과 승진하여 옮긴 관직, 直拜, 名宦, 資窮하여 당상에 오른 경우도 적당히 쓴다. 생짜울 쓰는 경우는 통정대부 이상은 아는 대로 모두 쓰고, 堂下는 70세 이상과 50세 미만의 경우 卒記를 쓰고, 나머지는 쓰지 않는다(필자주: 본문에서는 좌우가 바뀌어 있다).

아래쪽: 큰 글씨로 '某貫人'이라고 쓴다. 그 아래에 分註로 '父 누구'라고 쓴다. 出系한 경우는 '生父 누구'라고 쓴다. 부와 생부가 등과한 경우는 '어느 왕대 어느 해 방[某朝某年榜]'이라고 쓴다. 조상과 傍親, 외조 또는 처부 중에 등과자가 있으면 '어떤 관계의 누구[某親某] 어느 왕대 어느 해 방[某朝某年榜]'이라고 쓴다. 등과하지 않은 경우는 쓰지 않는다. 名賢이나 大官, 勳臣, 廉吏는 '어떤 관계의 누구[某親某] 관 무엇[官某]'이라고 쓴다. 이른 바 旁親은 5姓 5寸親으로 제한한다.”⁴⁴⁾

이 방식은 성명 이하를 크게 상단과 하단으로 구분하였다. 상단은 다시 3단으로 나누어 제1단에는 자와 출생년도, 제2단에는 생원·진사 이력과 별호를 쓰고 제3단에는 관력과 각종 행적을 기입하였다. 하단도 다시 2단으로 나누어 제1단에는 본관을 쓰고, 제2단은 좌우로 나누어 오른쪽에는 부친의 이름과 과거 이력, 왼쪽에는 형제·친척들의 급제 이력을 기재하였다. 이 구성은 크게 상단과 하단으로 나누어 상단에는 급제자 개인의 행적에 대한 정보, 하단에는 본관 이하 가족·친족에 대한 정보를 수록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18세기에 편찬된 다른 방목도 역시 독자적인 형식을 갖고 있다. 대표적인 국조문과방목 4종의 구성을 범례와 실제 수록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속은 앞부분에는 기재하지 않았으나 영조대 급제자를 전후하여 새로 추가한 항목들이다.

이를 보면 字와 출생년도, 관력·행적과 본관은 공통으로 포함되어 있다. 동래

44) 『國朝榜目』(규장각, 古4657-97) 凡例 “一 上方 大字先書稱號 次書姓名 分註 左方書字 右方書生年 左方書某年司馬 右方書別號 重試·文臣別科及書卒及八十以上壽及職名·勳封·兼職·名宦·謚號及或有被禍死罪謫死者及文廟從祀廟庭配享者 或左或右 隨宜書之 登科後初付起遷職及或直拜名宦或資窮陞堂者亦量宜書之 而凡書生卒者 通政以上則隨所知俱書 堂下則壽踰七十及未滿五十者書卒 其餘不書 一 下方 大字書某貫人 其下分註 父某 出系者 書生父某 父與生父登科者 書某朝某年榜 祖先及旁親 或外祖或妻父有登科者 亦書某親某某朝某年榜 非登科則不書 而或名賢或大官或勳臣廉吏則亦書某親某官某 所謂旁親限五姓五寸親”

세가본에 批點으로 표현된 친인척 급제자도 공통요소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친족 관계는 사조와 처부를 모두 기재한 경우와 부만 기재한 경우로 나뉜다. 사마와 직부 이력, 거주지도 기재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뉜다. 부와 친인척들의 급제방을 밝힌 것은 이만운본의 특징이다.

홍문관본		윤급본		동래세가본		이만운본	
奎11655		奎106		奎5202		古4650-97	
지역		지역		사마연도 (직부)		지역	
성명		성명		지역		성명	
출생년도	자	출생년도	자	출생년도	자	출생년도	자
사조 처부 친인척 급제자	관력 행적 사마 (직부)	관력 행적	사조 처부 친인척 급제자	관력 행적		별호	사마
				본관 친인척급제자수		(직부) 관력 행적 (거주지)	
(거주지)	본관	별호	본관	부 (거주지)		본관	
						친인척 급제방	부 급제방

아울러 제한된 지면에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朱圈과 批點을 사용하였다는 점도 주목된다. 윤급 소장본의 범례에는 '姓名旁 朱圈'이라고 하여 급제자의 이름 옆에 표기한 朱圈 10종의 의미를 제시하였다. 주권은 홍문관, 홍문록, 사가독서, 제학, 대제학 경력을 기준으로 표기되었다. 아울러 사조 중 급제자도 성명 곁에 작은 주권을 하도록 하였다. 홍문관본의 경우 급제자의 성명 곁에 주권 2종, ○와 ●가 찍혀 있는데, 윤급본과 비교하면 ○는 홍문관과 사가독서 경력자, ●는 대제학을 의미한다.

동래세가본 10책본 『국조방목』(규5202)에는 비점과 특기에 대한 범례가 실려 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1. 아버지가 등과한 경우 아버지의 이름에 붉은 점을 찍어 구별한다.
 1. 형제가 등과한 경우 성관의 곁에 붉은 점을 찍되 그 수대로 찍는다.
 ...
 1. 중시에 급제한 경우 성명 곁에 점 하나를 찍고 중시, 발영시, 등준시에 중복 합격한 경우 그 수대로 점 하나씩을 찍는다.
 1. 지위가 삼정승에 오른 경우 성명의 위에 점 하나를 찍는다.
 1. 湖堂과 玉堂에 참여한 자는 그 성명에 湖는 붉은 색으로 위에 쓰고 弘錄은 왼쪽에 쓴다.
 1. 文衡을 담당한 자(이하 곁)”⁴⁵⁾

비점을 찍은 경우는 두 종류이다. 하나는 부친이나 형제가 문과에 급제한 경우로 부친의 이름과 본관 곁에 비점을 찍었다. 또 하나는 급제자 본인이 급제 후에 重試, 拔英試, 登俊試 등에 급제하거나 지위가 삼정승에 오른 경우로 위치에 따라 그 의미를 달리하였다. 인원수나 횟수만큼 비점을 찍었다는 점도 흥미롭다.

사가독서자와 홍문관 경력자는 붉은 색으로 ‘湖’와 ‘弘’이라고 기재하였는데, 그 위치를 달리하여 ‘湖’는 성명의 위, ‘弘’은 성명의 왼쪽에 기재하여 시각적으로 구분이 쉽도록 하였다. 실제 본문에는 ‘弘’이 오른 쪽에 기재되어 있는데, 特除된 경우에는 ‘弘特除’ 혹은 ‘特弘’이라고 기재하여 구분하였다.

범례의 마지막 조항은 ‘文衡을 담당한 자[典文衡者]’라고만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 본문에서도 대제학을 따로 구분한 기호는 없다. 추가할 항목으로 고심하였으나 결국에는 추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국조문과방목에서 급제자 개개인의 정보를 수록할 수 있는 공간은 한 行에 불과하다. 영조·정조대에 편찬된 국조문과방목은 이 한 행에 맞추어 각기 자신이 선호하는 항목을 설정하고 지면을 세분하여 동일한 정보가 동일한 위치에 기재되도록 고안되었다. 일종의 표처럼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책 전체의 체계가 통일되어 시각적으로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또 해당 항목의 정보가 없는

45) 『國朝榜目』(규장각, 奎5202) 凡例 “一 其父登科者 於其父名 批朱點以別之 一 兄弟登科者 於其姓貫之傍 批朱點 而隨其數之多少 … 一 登重試者 於其姓名之傍 批一點 重、試拔英試 登俊試 隨其數 又批一點 一 位登三事者 於其姓名之上 批一點 一 參湖堂及玉堂者 各其姓名 湖則以朱書於上 弘錄者則□(書)於左 一 典文衡者”

경우 공란으로 비워 두고 추후에 해당 정보를 추가하여 책 전체의 체제와 통일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에 편찬된 방목들은 이 형식을 그대로 따라 새로운 방목을 추가하거나 이 형식을 응용하여 다시 자신만의 기재 형식을 고안하는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2) 종합 자료의 활용

편찬자들이 기재형식을 고안한 후 진행한 실제 편찬 작업은 각 항목의 내용을 채워나가는 것이었다. 이 작업은 우선 당시에 전하던 국조문과방목의 이본들을 종합, 정리하는 데서 출발하였다. 이만운본에서는 '예조방목'과 7-8개의 민간소장 방목을 검토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나아가 문과가 계속 시행됨에 따라 추가할 방목을 확보하는 작업도 병행되었다. 합격자 발표가 난 뒤 예조에서는 국왕의 윤허를 받은 최종 방목문서를 보관하였고, 예조본과 승정원본, 홍문관본 국조문과방목도 추가하였다. 민간에서는 합격자를 발표한 뒤에 그 명단이 광범위하게 필사 유포되었다. 국조문과방목 편찬자들은 민간에 유포된 자료를 활용할 수도 있었고, 예조나 홍문관의 자료를 활용할 수도 있었다.

기존의 국조문과방목이나 新榜의 방목문서를 확보하더라도 편찬자가 원하는 정보를 다 얻을 수는 없었다. 17세기 이전의 국조문과방목에는 급제자의 자, 관직 정보 등만이 간략히 수록되어 있을 뿐이었다. 개인의 기본적인 인적정보를 비롯한 여타 정보들은 추가적인 조사를 거쳐야만 확보할 수 있었다.

新榜의 방목문서에는 기본적인 인적사항이 수록되어 있었다. 이를 통해 급제자의 나이, 본관, 거주지, 부친의 직역과 이름을 확보할 수 있었다. 또 황윤석이 필사한 정시의 殿試榜에는 '恩賜'라고 하여 초시나 회시를 거치지 않고 전시에 直赴한 直赴殿試者들을 별도로 기재하고 있었다. 이로 미루어 보면 직부여부도 방목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⁴⁶⁾ 하지만 급제자의 가족·친족과 급제 후의 관력이나

46) 황윤석, 『이재난고』 권2, 『壬申九月二十日文科殿試榜二十人』(1752); 같은 책, 권3, 『七月

행적 등은 따로 조사해야만 했다.

국조문과방목을 편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新榜 급제자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는 알 수 없는 미래의 일이다. 이 부분은 공백으로 남겨 두고 뒤에 추가적으로 기록해야 하는 부분이다. 보다 주안점을 두는 곳은 이전 세대 인물들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여 자신이 설정한 항목을 채워 나가는 일이었다.

급제자 개인에 대한 정보를 가장 자세하게 보여주는 자료는 碑誌類 문자일 것이다. 윤급본과 이만운본에서는 비지류를 활용한 정황이 확인된다. 게다가 17세기 후반 이래 조선에서는 名臣錄이나 人物考처럼 여러 인물들의 행적을 집성한 책자의 편찬이 성행하였다.⁴⁷⁾ 이런 자료 역시 참고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자료들은 고위직에 오른 소수의 명망가들만 수록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에는 한계가 있었다. 보다 광범위한 인물들을 포괄하는 자료가 필요했다.

윤급본에는 후고를 위해 각종 첨지들을 붙여 놓았다. 이를 통해 윤급본이 활용한 자료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윤급본은 우선 당대에 전하는 여러 異本들을 검토하였다. 가령 태종 8년 무자방 급제자인 金滉의 이름 위에는 ‘一本父名繼忠’이라는 첨지가 붙어 있는데, 이를 통해 적어도 2종 이상을 검토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윤급본에는 이 이본들의 내용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있을 것이다.

아울러 자주 등장하는 자료는 족보이다. 예를 들어 성종 14년(1483) 식년시에 급제한 柳濱의 경우 “文化譜 濱 父孝良, 祖衡, 曾元顯, 外鄭孝文, 妻父金從舜·尹垓云 旣譜則如此 當考”라고 되어 있다. ‘文化譜’와 ‘旣譜’를 검토한 후 ‘旣譜’의 내용을 본문에 반영하고, ‘文化譜’의 내용은 첨지로 기재해 둔 것이다. 族譜는 가계를 파악하는 데 주요한 전거가 되었다. 언급되고 있는 족보는 文化譜, 旣譜, 全州譜, 咸安譜, 延安譜, 漢陽譜 등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그런데, 첨지 가운데는 ‘未考中’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가령 정미년 친시에 합격한 鄭楡의 경우 ‘鄭或作郭 在郭氏未考中’이라는 첨지가 붙어 있다. 윤급이 편찬

復政合慶庭試殿試榜」(1762).

47) 조정윤, 2019 「18세기 人物志 형식 筆記의 출현배경 연구-『左溪哀譚』과 『并世才彥錄』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100, 237-241면.

한 『국조문과성보』는 성씨, 본관별로 급제자를 분류하였는데, 각 성씨마다 본관을 알 수 없는 경우 '未考姓貫'이라는 항목으로 따로 정리해 두었다.⁴⁸⁾ 이 책의 괄씨 '未考姓貫'을 보면 郭愉가 올라 있는데, 첨지에는 '郭—云鄭氏'라고 기재되어 있다. '未考姓貫'은 『국조문과성보』의 분류항목인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정유가 『국조문과방목』에는 정유로, 『국조문과성보』에는 괄유로 이름이 올라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이름 자체가 다른 양상은 『국조문과성보』가 『국조문과방목』이 아니라 다른 자료에 근거하여 편찬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未考姓貫'이라는 항목은 해남윤씨가에 소장된 『萬家譜』에도 보인다. 또 이 책에는 鄭愉라는 인물은 없고, 郭愉라는 인물이 괄씨의 '未考姓貫' 항목에 들어 있다.⁴⁹⁾ 이에 비추어 보면 윤급은 『만가보』 계통의 종합보를 이용하여 『국조문과성보』를 편찬하였고, 『국조문과방목』을 편찬할 때에도 이 자료를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영조대에는 이미 趙涑·趙從耘의 『氏族源流』, 丁時述의 『東國諸姓譜』, 任慶昌의 『姓苑叢錄』이 널리 알려져 활용되고 있고 있었다.⁵⁰⁾ 이 책은 숙종 6년(1680) 『선원록』을 개찬할 때에도 전거 자료로 활용될 만큼 신뢰할 수 있는 기록으로 인정되었다.⁵¹⁾ 19세기 전반 李圭景의 기록에는 이 외에도 『氏族譜』(53권, 朴思正), 『百家譜』(10권, 許涵), 『氏族源流』(李景說), 『萬姓叢譜』(俞彥鑄), 『閩閩通考』(李德懋) 등 다양한 종합보들이 소개되어 있다.⁵²⁾

이 중 조속·조중은 숙질이 편찬한 『씨족원류』를 제외한 나머지 책들은 현재

48) 『國朝文科姓譜』(규장각, 古4650-148) 범례 “本未考則曰未考姓貫 而列於各姓之末”

49) 한국학자료센터 <http://kostma.aks.ac.kr/FamilyTree/>.

50) 황윤석, 『이재난고』 권12, 기축(1769) 3월 16일 기해 “是日 金丈謂余曰 想尊亦留意譜學 吾少時 欲撰吾家窮源錄 用功多矣 尙未脫稿 此氏族源流一帙 乃趙滄江 與其姪仲耘所共輯者 而亦有詳略之可論 又有丁時述所編諸姓譜 大勝於源流 又有任克所編姓苑叢錄二十八卷 尤勝於丁譜 吾嘗一番綽看 而未及致詳 任家今在利川地耳 大抵南人故家 多致意譜學者 此亦不可不一留意也”

51) 『璿源錄釐正廳儀軌』(1680, 장서각, K2-3834) 3책 凡例 “一今此釐正皆據郎廳前縣監趙從耘所錄氏族源流丁時述所錄東國諸姓譜前監察任慶昌所錄姓苑叢錄等書及各姓本譜正之”

52)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人事篇 「姓氏譜牒辨證說」.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형식이나 내용을 알 수는 없다.⁵³⁾ 따라서 윤급이 어떤 책을 활용하였는지는 특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윤급이 『국조문과방목』 편찬에 종합보를 활용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윤급본 『국조문과방목』과 『국조문과성보』에는 ‘當入全州譜’와 같은 방식으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표시한 경우들이 있다. 이때의 ‘전주보’는 『국조문과성보』의 성관 분류를 가리킨다. 즉 ‘전주보’는 개별 집안에서 편찬한 족보가 아니라 종합보에 기초한 특정 성관의 계보를 의미한다. 다른 姓貫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와 달리 ‘本譜’로 기재된 첩지도 있다. 태조 2년(1393)에 급제한 洪仲剛의 항목에 두주로 ‘本譜作汝剛’이라고 기재한 것이 그 예이다. 숙종 6년(1680)에 편찬된 『璿源錄釐正廳儀軌』(장서각, K2-3834)의 범례에는 『氏族源流』, 『東國諸姓譜』, 『姓苑叢錄』 등의 종합보와 함께 ‘各姓本譜’를 주요 근거자료로 삼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⁵⁴⁾ 윤급소장본의 첩지에 기재된 ‘本譜’ 역시 성관별로 편찬된 각 집안의 족보를 가리킬 것이다.

족보는 가계의 계보를 밝히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계보 안에 소속된 인물들의 행적을 밝히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가계의 위상은 소속 인물들의 행적을 통해 좌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별 족보는 물론 종합보에서도 개인의 과거 합격 이력과 관력, 주요 인물의 혼인 관계는 빠짐없이 기재하였다. 이런 종합보를 활용하면 급제자의 가계는 물론 급제자의 관력 등 주요 행적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

게다가 영조대 후반에는 이미 윤급이 편찬한 『국조문과성보』(일명 科譜)가 널리 유통되고 있었다. 현전하는 윤급본 『국조문과성보』(규장각, 古4650-146)는 인물마다 급제년도, 부명, 官爵을 필수 항목으로 기재하고 있다. 아울러 급제자의 부, 형제, 친척 가운데 급제자가 있는 경우 가장 가까운 인물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국조문과성보』를 활용하면 보다 수월하게 국조문과방목의 항목들을 채울 수 있었다.

윤급본 이외의 국조문과방목은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활용하였는지 확인되지

53) 안광호, 2018 『朝鮮後期 綜合譜의 종류와 그 성격』,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17-2.

54) 『璿源錄釐正廳儀軌』(1680, 장서각 K2-3834) 3책 凡例.

않는다. 다만 일률적으로 수록된 정보를 통해 활용 가능했던 자료들을 가늠해 볼 수는 있다.

국조문과방목에서 공통적으로 기재하고 있는 항목 중 하나가 생원·진사시 이력이다. 윤급본에서는 기재하지 않았으나 다른 방목에서는 중요항목으로 설정하고 합격연도까지 밝히고 있다. 종합보인 『만가보』의 경우 생원·진사시 합격 사실은 기재하고 있으나 합격연도는 생략되어 있다. 이 연도는 편찬자가 별도로 조사해야 하는 부분이다.

생원·진사시의 경우 문과와 달리 공식적으로 전시기를 망라한 국조방목을 편찬한 사례는 없었다. 하지만 예조에는 방목문서가 보관되어 있었고, 성균관에도 각 년방목들이 소장되어 있었다. 황윤석은 성균관에 보관된 방목을 보았는데, 누락된 부분도 있으나 세종 29년(1447) 이후의 방목이 있었다고 전한다. 성균관의 靑衿錄은 곧 생원·진사시 방목을 등서한 책이기도 하였다. 또 성종대 이래 동방합격자들이 사마방목을 간행하는 것이 유행하여 16세기 이후의 사마방목이 거의 대부분 전해지고 있었다.⁵⁵⁾

게다가 18세기에는 국조문과방목과 마찬가지로 생원·진사시의 종합방목을 편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 중 한사람이 朴流玉이다. 황윤석은 동료 이흠을 통해 이 책을 빌려보았는데, 책의 제목은 '國朝蓮榜'으로 12책에 달했으며, 태종 14년(1414)부터 정조 1년(1777) 사이의 145방이 실려 있었다. 특히 중종 이후의 방목은 인조대 1회를 제외하면 모두 남아 있었다.⁵⁶⁾ 이런 자료를 활용하면 16세기 이후 생원·진사시 출신들을 모두 분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합격 연도까지 추출할 수 있다.

55) 황윤석, 『이재난고』 권18, 신묘(1771) 4월 삭일 신미 “夫國紀私乘之出 莫今日詳也 文科則有曰 國朝榜目 小科則雖無合編行世者 而禮曹及成均館所藏榜目外 又有各家所藏 當初印榜雖久遠 尙往往未泯者”

56) 황윤석, 『이재난고』 권38, 병오(1786) 6월 15일 정해 “李奉事言 前泰安倅朴流玉 貫忠州 其父聖采士人也 所輯本朝生進榜目十二卷 雖於太祖定宗太宗之際 不無逸榜而亦近世所罕觀者 當以奉借”; 같은 책 “李奉事所借國朝蓮榜十二冊來 … 國朝蓮榜存者[주:自太宗甲午 至英宗甲午 共存一百四十五榜 而其餘佚者 不知幾何云]○式年榜點 三十榜佚 (이하 생략)”

현재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된 2책본 『國朝蓮榜』(奎12230)은 박유옥 편찬본에 비하면 누락본이 많지만 숙종대부터 고종 31년(1894) 과거제가 폐지될 때까지의 생원진사시 방목이 대부분 수록되어 있다. 국조연방의 편찬도 한 시대를 풍미했던 것이다.

한편 홍문관본과 윤급본에는 四祖와 妻父에 대한 정보가 일률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조와 처부에 대한 정보는 족보나 종합보를 참조할 경우 쉽게 파악할 수도 있다. 그러나 족보나 종합보는 속성 상 그때그때 자료가 갱신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통해 新榜 급제자의 사조와 처부를 파악하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윤급본이나 홍문관본에는 편찬 당대까지도 사조에 대한 정보가 거의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다. 특히 홍문관본은 다른 정보가 소략해지는 19세기 중반 이후까지도 사조정보는 계속 수록되어 있다. 이는 별도의 정보원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에 응시할 때는 개인의 신원을 증명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응시 원서를 접수하는 錄名 때 四祖單子(錄名單子)를 함께 제출하였다. 그리고 시험이 끝난 후에는 試所에서 시험에 관련된 여러 成冊과 함께 합격자의 四祖成冊도 별도로 작성하여 한성부 등에 올려 보냈다.⁵⁷⁾ 한성부에 사조성책을 보낸 것은 이곳에 소장된 호적과 대조하여 부정 합격자를 적발하기 위해서였다.

현재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는 순조 25년(1825) 생원·진사시 합격자들의 四祖만을 따로 기록한 『乙酉式年生員四祖』(奎9876)가 남아 있다. 이 책의 원래 소장처가 어디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회시에서도 사조성책이 작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 미루어 문과급제자의 경우에도 별도의 사조성책이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자료에 접근가능하다면 四祖에 대한 정보를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필자가 검토한 국조문과방목 가운데 홍문관본 계열과 윤급본을 제외하면 사조를 기록한 방목은 드물다.⁵⁸⁾ 국가 소장 자료에 접근하기는 쉽지 않았던 것이다.

57) 박현순, 앞의 논문(2018a), 222-227면 및 231-234면.

58) 사조를 기재한 방목으로는 윤급본과 홍문관본 계열 방목, 그리고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5책본 『국조문과방목』(古4650-26)이 있다.

그러나 홍문관본의 경우에도 妻父는 누락된 경우가 많다. 처부는 공식적으로 수합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료를 확보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국조문과방목에서 공통적으로 비중을 두고 있는 항목은 官歷이다. 국조문과방목의 관력 정보는 翰林, 兩司, 홍문관, 이조낭관 등 청요직 정보와 최고 혹은 대표 관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마다 기입 원칙은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관력 역시 종합보를 활용하면 쉽게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국조문과방목을 편찬한 영조·정조대의 급제자부터는 관직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편찬당시에 관료로 활동 중이었기 때문에 그 관력을 특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후대에 추가로 기재를 하더라도 급제자의 관력을 일일이 파악하여 기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다. 따라서 名士들의 경우 최고 관직이나 대표 관직을 기재한 경우가 많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공란으로 남겨 두었다. 관력이 누락된 경향은 홍문관본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내용을 쉽게 추가할 수 있던 민간 편찬본과 달리 어람에 대비한 홍문관본은 내용의 증보가 쉽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관력의 경우 상대적으로 청요직 이력이 많이 기재된 편이다. 이만운본의 범례에는 職名과 勳封, 兼職, 名宦, 諡號 등을 기재한다고 밝혔는데, 명환은 文衡, 湖堂, 副學, 直學, 南床, 三司, 舍人, 翰林, 吏判, 吏郎, 勳臣, 廉吏로 설정하고 있다. 이만운본에서 설정한 명환은 오늘날 선생안이 현전하는 관서들과 상당히 중복된다.⁵⁹⁾ 선생안의 편찬 자체가 명환 의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선생안도 편찬에 활용 가능한 자료였다.

그러나 이만운본에서도 영조대 이후 급제자들은 관직이 누락된 경우가 더 많다. 하지만 유독 兩司 혹은 三司와 承旨 이력만 꾸준히 기재되어 있다. 이 관직은 최종이나 최고관직은 아니며, 편찬자가 관력을 보여주는 대표 관직으로 선택한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이 경우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력을 추적해 가며 파악하기는 어려웠다. 이 기록은 선생안류를 참조하여 일률적으로 파악한 정보일 것이다. 이

59) 현전하는 선생안에 대해서는 이남욱, 2017 「장서각 소장 先生案의 현황과 가치」, 『동양고전연구』 69 및 나영훈, 2019 「규장각 소장 '先生案'의 현황과 자료적 가치」, 『한국문화』 86 참조.

만운과 그 아들 李儒準(1760-1815)은 왕명으로 『동국문헌비고』의 증보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가 기록물에 대한 접근이 용이했을 것으로 보인다.⁶⁰⁾

영조·정조대 국조문과방목의 편찬자들은 야심차게 각자의 고유한 형식을 고안하고 그 항목들을 채워 나가려고 시도하였다. 이런 시도가 가능했던 것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각종 종합 자료들이 이미 편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종합보의 등장은 영조·정조대 국조문과방목 편찬 붐의 중요한 동인이 되었다.

이에 비해 편찬시점이 되는 영조·정조대 급제자부터는 방목문서에 수록된 기본정보와 사조, 생원진사시 합격 이력 등 공적 기록을 통해 확인되는 정보 이외는 기록이 소략해 진다. 특히 관력 기재에서 이런 경향이 뚜렷이 나타난다. 후대의 편찬자들은 정보의 추가적인 조사보다는 공적 기록에 기초한 추기에 치중하였다. 이에 따라 민간에서 편찬한 국조문과방목도 실제 수록 내용은 예조본이나 승정원본과 유사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3) 국조문과방목의 활용과 '인물정보학'

국가기관에서 편찬한 국조문과방목은 일종의 등록이자 전고서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업무에 참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용도였다. 과거를 시행할 때 전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조문과방목을 참고하는 사례들은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민간에서 편찬한 국조문과방목은 급제자의 명단에 기초한다는 점에서는 예조본이나 승정원본과 그 성격이 동일하다. 그러나 각 개인의 급제 후 행적과 가족·친족관계를 보다 비중있게 다룬다는 점에서는 그 성격이 달랐다.

이만운본은 그 범례에서 考閱에 편리하도록 책을 편집하였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책의 활용을 염두에 두고 이 책을 편찬한 것이다. 아울러 碑誌나 族譜의 내용을 전적으로 수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覽者', 곧 독자의 양해를 구했다. 국조

60) 이만운·이유준 부자의 『동국문헌비고』 증보에 대해서는 옥영정, 2007 『『東國文獻備考』에 대한 서지적 고찰』, 『진단학보』 109, 243-245면 참조.

문과방목은 불특정 다수 독자들의 활용을 염두에 둔 실용서였던 것이다.

이익은 재종질 李觀休(1692-?)가 『국조방목』을 증보한 것이 譜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하였다.⁶¹⁾ 실제 황윤석과 그 일족들은 문중의 족보를 편찬하기 위해 백방으로 자료를 찾아 다녔는데, 선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때 생원·진사시 방목과 국조문과방목을 활용하였다.⁶²⁾ 국조문과방목을 편찬할 때는 족보를 통해 많은 정보를 입수하였지만 역으로 국조문과방목이 족보를 편찬하는 전거자료가 되기도 했던 것이다.

국조문과방목이나 족보는 각 인물의 행적을 압축적으로 기재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구체적인 수록 내용도 유사하다. 족보에서 행적의 중심을 차지하는 과거 이력과 官歷은 국조문과방목에서도 핵심적인 부분을 이룬다. 국조문과방목과 족보는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다.

나아가 국조문과방목이 제공하는 급제자 개개인에 대한 정보는 당대인들이 파악하는 핵심적인 이력으로서 그 자체가 인물사전으로도 활용되었다. 황윤석은 이만운과 이흠에게 국조문과방목을 빌려 보면서 관심있는 인물들에 대한 기록을 따로 발췌해 두었다. 황윤석에게 국조문과방목은 인물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원천이 되었던 것이다.

인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碑誌類가 훨씬 양질의 자료였다. 그러나 비지류가 전하는 인물들은 제한되어 있었다. 이에 비해 국조문과방목은 보다 광범위한 인물들이 수록되어 있었고, 그 내용도 압축적이었다. 비록 이를 통해 인물에 대한 세세한 정보는 알 수 없다 하더라도 기초적인 정보는 파악할 수 있었다. 국조문과방목은 일종의 공구서였던 셈이다.

이 시기에는 국조문과방목 외에도 특정 분야의 인물들을 종합적으로 수록한 인명록을 편찬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황윤석·이만운과 어울렸던 李燾이라는 인물

61) 李瀾(1681-1763), 『星湖全集』 권50, 『國朝榜目序』 “再從侄仲賓有國朝榜目十卷 各有注錄頗備 將爲譜學之助”

62) 황윤석, 『이재난고』 권6, 병술(1766) 2월 초8일 무신. 황윤석 일족의 족보 편찬을 위한 자료 수집에 대해서는 노혜경, 2009 『黃胤錫의 『平海黃氏世系』 편찬 배경과 특징』, 『장서각』 22, 36-39면 참조.

은 그 경향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다. 이흠은 충주 출신인데, 譜學으로 이름을 얻어 정조 초반 『璿源譜』 편찬에 참여하였고, 이를 계기로 관직에도 진출하였다. 스스로도 譜學으로 벼슬을 얻었다고 이야기할 만큼 보학 전문가였다.⁶³⁾ 황윤석은 이흠의 관심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이봉사가 마음을 쓰는 것은 譜錄, 科譜, 國朝文科榜目, 國朝生進榜目, 大臣錄, 文衡錄, 翰林錄, 功臣錄, 清白吏案, 儒賢師友錄, 文章名筆家, 고금 인물들의 別號摠錄, 野史, 璿譜, 우리나라 고금의 文集과 小說惣錄이다. 이 또한 훗날 국사의 기록에 도움이 될 것이다.”⁶⁴⁾

이흠의 관심사는 광범위하였다. 그러나 그의 관심사는 譜錄, 璿源譜와 같은 족보와 국조문과방목, 국조문과성보, 국조연방, 선생안, 別號錄, 師友錄, 문장가, 명필가 등 각 분야의 인명록을 편찬하는 것으로 대별된다. 그 결과물은 『氏族源流』와 같은 종합보, 國朝文科榜目, 國朝蓮榜, 淸選考, 號譜, 師友錄, 각종 先生案 등과 같은 책이 되었을 것이다. 현재 이와 관련된 서적들이 여러 異本으로 전하는 것을 보면 이흠과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복수로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흠은 각각의 책을 구상하였지만 그 책들의 내용은 상보적이다. 이 책들은 국조문과방목의 해당 항목에 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국조문과방목은 다른 책의 자료가 될 수 있다. 각각의 책에 수록된 인물의 범주는 다르지만 개인의 인적 정보는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수록되기 때문이다.⁶⁵⁾ 이흠은 개인의 계보를 포함한 인적 정보와 활동분야라는 두 개의 축을 오가며 조선시대 인물정보를 축적하고 있었다. 이흠의 작업은 譜學의 일환으로, 오늘날의 학문분과로 환언하자면 ‘인물정보학’

63) 황윤석, 『이재난고』 권38, 병오(1786) 5월 2일 갑진; 같은 책, 권38, 병오(1786) 6월 24일 병신

64) 황윤석, 『이재난고』 권38, 병오(1786) 6월 17일 기축 “李奉事所用心者 譜錄也 科譜也 國朝文科榜目也 國朝生進榜目也 大臣錄·文衡錄·翰林錄·功臣錄·清白吏案也 儒賢師友錄也 文章名筆者也 古今諸人別號惣錄也 野史也 璿譜也 東人古今文集小說惣錄也 是亦足以補他日國史之闕矣”

65) 선생안의 수록 내용에 대해서는 나영훈, 앞의 논문, 258-261면 참조.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영조·정조대에는 각 분야에서 이전의 문헌을 종합 정리하여 책을 편찬하는 일이 성행하였다. 국가에서는 『동국문헌비고』와 『국조인물고』 등을 편찬하였고, 민간에서는 이익의 『星湖僿說』이나 이공익의 『燃藜室記述』과 같은 방대한 저술들이 나타났다. 동시에 類書처럼 새로운 분류체계를 도입하여 지식정보를 재분류하려는 경향도 나타났다.⁶⁶⁾ 이 흐름이 진행하고 있던 작업 역시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 이 흐름은 광범위한 인물들을 族譜로 종합하는 한편 이를 과거와 관력, 학맥 등 분야별로 범주화하여 인물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국조문과방목의 편찬은 그 하위 범주에 속한다.

국조문과방목은 조선전기부터 편찬되어 왔으며, 조선후기에 편찬된 국조문과방목도 조선전기의 국조문과방목에 기초하였다. 하지만 영조·정조대를 통하여 각종 인적 정보와 가계정보를 추가하면서 국조문과방목은 인물사전, 인물지로 그 효용이 확대되었다. 이런 흐름은 영조·정조대에 나타난 譜學에 대한 관심과 지식·정보의 종합과 재분류라는 경향의 일각을 이루고 있었다.

5. 맺음말

국조문과방목은 조선전기부터 편찬되어 유통되던 책자이다.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필사되고 내용이 증보되면서 당시부터 여러 異本들이 존재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흐름은 조선후기까지도 계속 이어져 오늘날 수많은 이본들이 전하게 되었다. 국조문과방목은 특정한 한 개인의 편찬물이 아니라 수백 년에 걸친 공동작업의 산물이다.

그 가운데 영조·정조대에는 새로운 움직임도 등장하였다. 영조·정조대 편찬자

66) 심경호, 2018 『조선시대 지식정보 회집 편찬물의 연구를 위한 초보적 탐색』, 『韓國思想史學』 59.

들은 새로운 기재 형식을 고안하여 기존의 방목을 종합 정리하는 한편 항목과 내용도 증보하였다. 그 결과 국조문과방목은 보다 체계적이고 풍부한 인물정보를 담은 책자로 거듭나게 되었다. 국조문과방목의 인물지적 성격이 강화되었다. 이 작업은 예조, 홍문관, 尹汲, 李萬運, 李觀休 등 여러 사람에 의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동일한 성격을 지니면서도 형식이 서로 다른 이본들이 만들어졌다. 이 책들은 다시 여러 사람에 의해 필사되고 증보되었다. 그 결과 유사하면서도 각기 다른 방목들이 현전하게 되었다. 하지만 영조·정조대 고안된 형식이 이후에도 계속 활용되고 응용되었다. 현전하는 국조문과방목은 많은 경우 영조·정조대에 진행된 편찬 작업의 산물이거나 이를 계승한 증보판이다.

영조·정조대 국조문과방목의 편찬이 성행한 것은 당대의 학술 지형과 사회적 수요라는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국조문과방목은 각종 문헌을 종합 정리하고 학계의 성과를 반영하여 편찬되었다. 국조문과방목의 편찬 자체가 문헌의 종합 정리라는 당대 학술지형의 일각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국조문과방목의 편찬은 무엇보다 譜學의 성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국조문과방목은 족보를 통해 급제자들의 인물 정보를 채록하는 동시에 족보 편찬을 위한 인물정보를 제공하였다. 이 작업은 官案이나 先生案, 號譜와 같은 분야별 인명록의 편찬과도 그 궤를 같이하는 것이었다. 이런 작업은 ‘인물정보학’이라고 칭할 수 있으며, 국조문과방목의 편찬은 그 하위 분과에 해당된다.

국조문과방목은 다양한 이본이 전하지만 기재형식을 중심으로 보면 그 계통이 몇 가지로 나뉜다. 그리고 그 계통에 따라 편찬의 지향점도 다른 경향이 보인다. 이 문제에 천착해보면 18세기의 학술 동향과 그 지향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논문투고일(2020. 5. 14), 심사일(2020. 5. 26), 게재확정일(2020. 6. 11)

참고문헌

- 나영훈, 2019 「규장각 소장 '先生案'의 현황과 자료적 가치」, 『한국문화』 86.
- 노혜경, 2009 「黃胤錫의 『平海黃氏世系』 편찬 배경과 특징」, 『장서각』 22.
- 박현순, 2018 「조선후기 科擧의 榜目文書와 榜目成冊」, 『조선시대사학보』 85.
- _____, 2018 「조선후기 科擧 榜目の 편찬과 간행」, 『한국문화』 84.
- 송준호, 1970 『李朝生員進士試의 연구』, 대한민국국회도서관.
- _____, 2001 「조선문과방목 해제-Wagner & 宋 朝鮮文科榜目に 관한 안내문」, 『보주조선문과방목』.
- 심경호, 2018 「조선후기 지식정보 회집 편찬물의 연구를 위한 초보적 탐색」, 『韓國思想史學』 59.
- 안광호, 2018 「朝鮮後期 綜合譜의 종류와 그 성격」,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17-2.
- 옥영정, 2007 「『東國文獻備考』에 대한 서지적 고찰」, 『진단학보』 109.
- 이남옥, 2017 「장서각 소장 先生案의 현황과 가치」, 『동양고전연구』 69.
- 이재욱, 2017 「조선후기 科擧合格者의 디지털 아카이브 편찬과 인적 관계망 구현」,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 조정윤, 2019 「18세기 人物志 형식 筆記의 출현배경 연구- 「左溪哀譚」과 「并世才彥錄」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100.

AbstractCompilation of *Gukjomungwabangmok* and 'Personnel Informatics' in the 18th Century Korea

Park, Hyun Soon *

Gukjomungwabangmok is the list of successful candidates for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Its various copies are extant today and their format or each person's information differs depending on different copies of the text.

This paper examines various copies of the text and their compilation process focusing on the reason why those differences appeared in various copies. This study finds out that *gukjomungwabangmok* was newly published during King Yeongjo and Jeongjo's reign, and further elaborates on its characteristic and meaning from the perspective of academic history.

Gukjomungwabangmok was compiled and circulated from the early Joseon period. But as it was transcribed and supplemented by many people over a long period of time, various copies of the text began to appear. In this sense, *gukjomungwabangmok* was not a product of a certain individual but a collaboration of various people from different generations.

Among them, during the reign of King Youngjo and Jeongjo, compilers such as Hongmungwan, Yun Geup, and Yi Man-un began to come up with their unique formats and enlarged the contents. As a result, the text developed into a more systematic one with richer contents of personnel informations. These texts were again transcribed and supplemented by various others. A number of extant *gukjomungwabangmok* are the result of the compilation project from King Youngjo and Jeongjo's reign or their enlarged edition.

The development of *gukjomungwabangmok* in the 18th century had close connection to genealogies above all else. *Gukjomungwabangmok* relied on genealogies for personal

* HK Associate Professor,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informations of the passers while providing informations for compiling genealogies at the same time. This was in line with the trend of compiling a list of people in each field such as former and current officials or major figures in Korean history. These works are collectively referred to as 'personnel informatics' in this paper. The compilation of *gukjomungwabangmok* belonged to one area of the 'personnel informatics'.

Key words : gukjomungwabangmok, gukjobangmok, bangmok, civil service examination, genealogy, Yun Geup, Yi Man-un.